#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06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조정훈·서명옥·최수진

박준태 • 인요한 • 서천호

김용태 · 김대식 · 정성국

최형두 • 박충권 의원

(11인)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인재양성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부의 정책도 부처·산업별로 인력 수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 계획의 수립 등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총괄·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미구

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범정부・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재양성정책의 수립·총괄·조정·점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재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을 촉진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해당 시·도의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인재양성정책의 조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

항 등을 심의함(안 제11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 재양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재양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재양성정책의 기반을 조성함(안 제18조 및 제23조).

##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재양성정책의 수립·총괄·조정·점검·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재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재"란 개인의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추 사람을 말한다.
- 2. "인재양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재양성기관이 필요한 인 재를 육성·배치·활용·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 3. "인재양성정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재양성을 위하여 마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양성을 위한 시

- 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양성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인재양성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인재양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재양성 업무의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인재양성정책의 기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정보 제공·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재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국가인재양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6조(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1조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제11조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다.
- ④ 인재양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재양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 2. 인재양성 관련 규제 개선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생애주기별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 4.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 5. 인문·사회 및 기초학문 분야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 6.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협력 및 교육기관·산업계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7.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8. 인재양성 관련 정보관리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9. 인재양성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10.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인재 양성 · 유치에 관한 사항
- 11. 인재양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12. 인재양성정책 관련 각 부처별 시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11 조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

- ·도 지방시대 계획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과 연계하여 매년 해당 시·도의 인재양성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인재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 인재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인재의 양성 · 유치 · 채용 및 정주 ·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 지역 내 인재양성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 3. 시·도 인재양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인재양성기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시·도 인재양성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9조에 따른 시·도인재양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 인재양성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인재양성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는 시 · 도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매년 해당 연 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재양성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인재양성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인재양성전략회의) ①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두다

- ② 전략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인재양성정책의 조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4. 제16조에 따른 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5. 제17조에 따른 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 6. 제21조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 7. 제22조에 따른 인재양성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8. 제23조에 따른 인재양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및 의장이 제안하는 사항
- 10. 다른 법령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2조(전략회의의 구성) ① 전략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교육부장관과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 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부의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

- 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 2. 인재양성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⑤ 전략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전략회의의 운영) ① 의장은 전략회의를 소집 · 주재한다.
  - ② 전략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실무조 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략회의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분 야별로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 ⑤ 전략회의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략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전략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및 분과회의의 조직·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전략회의 심의 결과의 활용) ① 전략회의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인재양성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전략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전략회의 지원본부) 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재양성 과 관련한 부처 간 협업 및 인재양성정책의 수립·조정·점검·지 원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재양성전략회의 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인재양성정책의 점검 · 지원 등

- 제16조(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재양성정책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 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략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인재양성정책
  -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인재양성정책
  - ② 제1항의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재양성정책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략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1항의 자체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① 전략회의는 다음 각 호의 인재양성정책이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할 수 있다.
  -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재양성정책
  - 2.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인재양성정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재양성정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인재양성정책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영향분석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이의 협의를 거쳐 영향분석의 실시 여부 및 방식 등을 결정한다.
- ③ 전략회의는 제1항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인재양성기관, 그 밖에 관련 법인·단체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전략회의는 제1항의 영향분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3조에 따른 인재양성지원센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영향분석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인재양성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인재양성정책을 총 괄하는 인재양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인재양성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 1.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인재양성정책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역인재양성정책의 추진) ① 시·도지사는 시·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 인재양성협의회는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② 시·도 인재양성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시·도 인재양성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도 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시·도지사는 시·도 인재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위원회와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지역 인재양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략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제20조(초광역 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인재양성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동·협력정책(이하 "초광역 인재양성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광역 인재양성정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 제21조(조사·분석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인재양성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활용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
  - 1. 인재양성의 투자ㆍ성과,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지표의 개발 및 측

정 등에 관한 사항

- 2. 인재양성기관의 인력배출 규모 및 취업현황·추세 등에 관한 사항
- 3. 산업별·지역별·분야별 인력수요 및 공급 현황과 중·장기 전망 에 관한 사항
- 4.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구·훈련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 5. 인재의 국제 이동 및 인재양성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6. 인재양성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경제, 산업, 기술, 교육, 복지 동향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인재양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의 조 사·분석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의 조사·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인재양성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의 조사·분석 결과를 전략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지역 인재양성 에 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22조(인재양성정보 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 정부는 인재양성에 관

한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인재양성에 관한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
- 2. 인재양성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3. 인재양성에 관한 지식·정보의 생산, 관리 및 유통기관의 육성 제23조(인재양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재양성지원센터(이하"인재양성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있다.
  - ② 인재양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전략회의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 2. 제17조에 따른 영향분석에 관한 사업
  - 3. 제21조에 따른 조사·분석에 관한 사업
  - 4. 제22조에 따른 인재양성정보 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5. 제24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업
  -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재양성 관련 업무의 지원을 위한 시·도 인재양성지원센터(이하 "시·도 인재양성지원센

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재양성지원센터 및 시·도 인재양성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인재양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 인재양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장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망 구축 등

- 제24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①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인재양성지원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양성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양성정책의 효율적 인 추진 등을 위하여 지역의 행정기관과 지역 내 인재양성 관련 연

구기관, 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인재양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①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 간부문의 인재양성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양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재양성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⑤ 그 밖에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등 인재양성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민간기관 등과의 지원 및 협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 재양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재양성기관, 관련 법인 및 단 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양성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폐지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 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 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4조(「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구성 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시·도 인재양성협의회 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실시된 인적자원개발사업 자체평가는 이 법에 따른 자체평가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인재양성지원센터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구축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은 이 법에 따라 구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협력망으로 본다.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은 이 법에 따라 인재양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재양성정책"으로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로 한다.

③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를"을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2조를"로 한다.

④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국가인재양성기본법」"으로 한다.

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나목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 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국가인 재양성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로 한다.